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4·235·236·237호		
의안명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안자	서초구청장(체육진흥과)	제안연월일	2024.5.17.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훈

I

제안내용

【 의안번호 제234호 】

-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1. 제안이유

-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2008. 4. 15. 개관 이후 2013년 최초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현 수탁 업체인 서초구체육발전협의회와 재계약을 통해 총 6년 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임.
-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공공체육시설로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임.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면적	규모	주요시설	위탁기간	수탁업체
반포종합 운동장 체육센터	서초구 신반포로 16길 30	1,501㎡	지상2층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탁구장	2022.01.01. ~ 2024.12.31.	서초구 체육발전 협의회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기간 : 3년 (2025. 01. 01. ~ 2027. 12. 31.) 예정
- 위탁 업무 :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운영·관리 및 기타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수행

다.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수탁자격 :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위탁예산 : 없음

- 운영 수입금으로 시설 운영(자립형 민간위탁)
 - ※ 2023년 사업비 : 약 220,000천원
- 위·수탁 협약에 따른 수익적립금은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으로 적립

마. 2024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별첨 참조

【 의안번호 제235호 】

-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1. 제안이유

-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과 내곡동체육시설은 1990년 1월, 2012년 4월 각각 개관 이후 2019년 1월부터 통합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현 수탁업체인 미래생활체육연합회와 재계약을 통해 총 6년 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임.
-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과 내곡동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임.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면적	주요시설	위탁기간	수탁업체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서초구 매현로 99	7,863㎡	테니스코트 11면 (실내 3, 실외 8)	2022.01.01. ~	미래 생활체육 연합회
내곡동 체육시설	서초구 신흥말길 23-5	8,730㎡	실외 테니스코트 6면, 다목적 구장 1면	2024.12.31.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기간 : 3년 (2025. 01. 01. ~ 2027. 12. 31.) 예정
- 위탁 업무
 -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내곡동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기타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수행

다.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수탁자격 : 실내·외 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위탁예산 : 없음

- 운영 수입금으로 시설 운영(자립형 민간위탁)
 - ※ 2023년 운영비 : 약 1,700,000천원
- 위·수탁 협약에 따른 수익적립금은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으로 적립

마. 2024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별첨 참조

【 의안번호 제236호 】

-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1. 제안이유

-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은 2005년 10월 개관 이후 2019년 9월부터 현 수탁업체인 서초구테니스협회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 4개월 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임.
-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은 공공체육시설로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임.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면적	주요시설	위탁기간	수탁업체
반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서초구 신반포로 16길 30	7,308㎡	실외 테니스코트 12면	2022.09.01 ~ 2024.12.31	서초구 테니스협회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기간 : 3년 (2025. 01. 01. ~ 2027. 12. 31.) 예정
- 위탁 업무
 -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 운영·관리 및 기타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수행

다.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수탁자격 : 실외 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위탁예산 : 없음

- 운영 수입금으로 시설 운영(자립형 민간위탁)
 - ※ 2023년 운영비 : 약 1,300,000천원
- 위·수탁 협약에 따른 수익적립금은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으로 적립

마. 2024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별첨 참조

【 의안번호 제237호 】

-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1. 제안이유

- 서초종합체육관은 2018년 12월 개관 이후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코오롱스포렉스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였고, 2021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현 수탁업체인 (주)스포월드와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1일부터 3년 간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임.
- 서초종합체육관은 공공체육시설로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임.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면적	주요시설	위탁기간	수탁업체
서초종합 체육관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48	6,320㎡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	2021.12.01 ~ 2024.11.30	(주)스포월드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기간 : 3년 (2024. 12. 01. ~ 2027. 11. 30.) 예정
- 위탁 업무
 - 서초종합체육관 운영·관리 및 기타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수행

다.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재계약(‘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수탁자격 : 종합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위탁예산 : 132,000천원

- 운영 수입금으로 시설 운영(자립형 민간위탁)
 - ※ 2023년 운영비 : 약 1,800,000천원
- 민간위탁금 : 132,000천원
 - 시설 지역적 특성상 이용자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 위·수탁 협약에 따른 수익적립금은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으로 적립

마. 2024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별첨 참조

II 검토의견

1. 동의안 제출취지

-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주민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각각 위탁·계약 기간 도래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1)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시설

의안 번호	시설명	위 치	주요시설	위탁기간	의회 동의일	수탁업체	비고
234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서초구 신반포로16길 30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2022.01.01~ 2024.12.31	2018.10.29	서초구 체육발전 협의회	재위탁 예정 (2025.01.01.~ 2027.12.31.)
235	양재시민의숲 테니스장	서초구 매현로 99	실내·외 테니스코트 11면	2022.01.01.~ 2024.12.31	2014.12.09	미래생활 체육 연합회	재위탁 예정 (2025.01.01.~ 2027.12.31.)
	내곡동체육시설	서초구 신흥말길 23-5	실외테니스코트 6면				
236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서초구 신반포로16길 30	실외 테니스코트 12면	2022.09.01.~ 2024.12.31	2016.05.24	서초구 테니스협회	재위탁 예정 (2025.01.01.~ 2027.12.31.)
237	서초종합체육관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48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2021.12.01.~ 2024.11.30	2017.12.21	(주)스포월드	재계약 예정 (2024.12.01.~ 2027.11.30.)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무와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에서 정하고 있음.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본 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4)에서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와 같은 조 제4항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5), 같은 조례 제5조제3항6)에 따라 본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가능과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동의안 주요 내용

○ 의안번호 234호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의 경우,

- 2018. 10.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은 후, 2019.01.01.부터 2021.12.31.까지 현 수탁업체와 재위탁하고, 이후 재계약을 통해 2022.01.01부터 2024.12.31.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어, 향후 재위탁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 의안번호 235호 양재시민의숲테니스장 및 내곡동체육시설의 경우,

- 2014. 12.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은 후, 2019.01.01.부터 2021.12.31.까지 현 수탁업체에 위탁운영하였고, 이후 재계약을 통해 2022.01.01.부터 2024.12.31.까지 위탁 중에 있어, 향후 재위탁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 다만, 2014. 12. 구의회의 최초 위탁동의를 받은 후 약 4년이 경과한 2019년부터 위탁운영을 한 것으로, 재계약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위탁운영 되기 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았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의안번호 236호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장의 경우,

- 2016. 5.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은 후, 2019.09.01.부터 2022.08.31.까지 현 수탁업체에 위탁운영하였고, 이후 재계약을 통해 2022.09.01.부터 2024.12.31.까지 위탁 중에 있어, 향후 재위탁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 다만, 의안번호 235호와 동일한 사항으로 재계약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위탁운영 되기 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았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의안번호 237호 서초종합체육관의 경우,

- 2017. 12.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은 후, 2018.12.01.부터 2021.11.30.까지 이전 수탁업체에 위탁운영하였고, 2021년 현재 위탁운영 중인 수탁업체와 2021.12.01.부터 2024.11.30.까지 재위탁 운영 중에 있어, 향후 재계약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필요함.

- 각각 제출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7)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설개요, 민간위탁 예정기간, 사업목적 및 위탁 내용 등을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8)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적합하게 기재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

-
- 7)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인력 운영의 적정성
 3.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4.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⑦ 생략
- 8)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4. 종합검토

- 제출된 동의안은 모두 공공체육시설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주민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각각의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계약 기간 도래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제출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각 체육시설의 운영현황,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수탁업체 선정 방식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설명과 함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